

# 업무협력약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분야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해외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분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약사업)

1. 건축설계분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진출지원
2. 건축설계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행사 공동개최 또는 지원사업 홍보 등 지원
3. 해외건설 관련 정보 공유
4.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## 제3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 제4조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호 동의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신의성실)

양 기관은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여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수행한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·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제7조(일반사항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31일



해 외 건설 협 회  
회 장 이 건 기



대 한 건축 사 협 회  
회 장 석 정 훈